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위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14. 6. 9(월)평창군수(자치행정과장)

나. 회부일자 : 2014. 6. 20(금)

다. 상정일자 : 2014. 6. 20(금) 제20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자 : 자치행정과장 최찬웅)

-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관련 한시정원, 사회복지직 증원, 소득세 독립세 전환, 지적재조사 보강 등이 포함된 총액인건비 기준정원이 변경되었으므로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기관별 정원을 합리적으로 재조정 하고자 함.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홍금숙)

- 평창군 공무원의 정원은 “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13년도 11월 19일 승인된 『2018평창동계올림픽 관련 한시정원 승인』 과 2014년도 1월 2일 승인된

『2014총액인건비 기준정원 승인』, 2014년 3월 19일 통보된 『규제개혁 전담부서 설치를 위한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17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세부적인 증가사유는 2018년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승인된 동계올림픽 지원 9명, 지방소득세가 국세의 부가세 형태에서 국세와 분리하여 지방세의 독자적 과세체제인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맡기 위한 인원 2명(재무과), 지적재조사 보강 1명(종합민원과), 사회복지직 4명(주민생활지원과), 규제개혁추진 증원 1명(기획감사실) 등 17명이 되겠으며 동계올림픽 증가 9명은 위생 및 숙박 분야 1명(환경과), 도로보상 1명(안전건설과), 경관정비 4명(도시주택과), 특구개발 3명(동계 올림픽 추진단)이 되겠음

- 본 개정은 총액인건비 기준정원 반영과 업무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정원 승인 분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91명”을 “608명”으로 하고 제1호 중 “579명”을 “596명”으로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 ① 집행기관의 정원 중 2018평창동계올림픽 한시정원 9인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집행기관의 정원중 규제개혁추진단 한시정원 1인은 시행일로부터 1년까지로 한다.

[별표 3]

평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 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608	608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585	585				
4급	2	1		1		
4~5급	2	2				
5급	25	10	2	4	1	8
6급 이하	555	555				
전문경력관 소계	1	1				
연구직 계	2	2				
연구관						
연구사	2	2				
지도직 계	19	19				
지도관	1			1		
지도사	18	18				
별정직 계	1	1				
7급상당 이하	1	1				